

의안번호	제 190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23년 2월 21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

의안 번호	190
----------	-----

제출연월일: 2023. 2. 21.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구성원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보장과 자치기구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1) 충청북도교육감의 학교 운영 자율성 존중과 학교구성원의 참여 제도 개선 노력
- 2) 학교장의 학교구성원 의사결정 보장, 제시 의견 존중 및 반영 노력
- 3)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상호 존중

나.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1) 학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설치
- 2)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 보장 노력

다.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협의 및 합의: 협의되었음(정책기획과, 예산과, 노사협력과, 유아
특수복지과, 학교혁신과, 예산과, 교원인사과)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2. 9. 23. ~ 2022. 10. 13.
- 2) 규제심사: 심사 대상 아님
-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부모를 말한다.
4.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교사"란 제4호에 따른 교원 중 교장과 교감, 원장과 원감을 제외한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한다.
6. "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7. "교직원"이란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절차를 보장하고,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며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학생·학부모·교직원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제시한 의견을 상호 존중한다.

제4조(자치기구의 구성)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둔다.

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으로 구성하는 학생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않는다.

② 학생회에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학생총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치활동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교직원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④ 그 밖에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⑤ 학생회는 제3항 각 호의 협의 결과를 모든 학생에게 알린다.

⑥ 학생회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및 교직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없도록 노력한다.

제6조(학부모회) ① 학부모회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제1항을 준용하여 학부모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교직원회를 둔다.

② 교직원회에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사회, 직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직원회의 토론과 협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⑤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2. 교직원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복지 및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육과 관련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교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⑦ 교직원회의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제8조(학교자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8. 30.] [대통령령 제32883호, 2022. 8. 30., 일부개정]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 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회는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2020. 2. 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5.>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 2. 28., 2015. 9. 15., 2020. 4. 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 실현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시행직 후 학교자치조례 설명회 및 홍보 예산 등 안착을 위한 예산을 한시적으로 7,820천원 편성하였고 향후 학교운영기본경비를 통하여 단위학교별 자율적 편성 운영하기에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충청북도교육청 향후 조례 안착을 위한 소요예산이 1억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 교육국 학교자치과장 이범모